

---

# 교통건설국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

**교통정책과**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도로 일원
사업규모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889개소)		
사업목적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신호 운영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643,500	1,921,404	1,671,404	0	250,000	277,90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43,500	1,921,404	1,671,404		250,000	277,904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0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경정)6,250,000원*48개소-(기정)6,250,000원*8개소	= 250,000	

## □ 예산요구 사유

-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 예산증감 사유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 2026년까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sup>1)</sup> 도입 추진중  
(경기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및 운영 조례)
  - 우선신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후교통신호제어기(2004년형) 746대 교체 필요
  - 순차적 교체가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48대 교체 추진
  - 관련문서 : 경기도 교통정보과-2288(2025.3.18.)호 / 김포시 스마트도시과-1062(2025.02.03.)호

1)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 경기도 시군별로 구축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의 정보를 연계하여 긴급차량 출동 시 인접 지자체의 신호 제어 가능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 ~ 2025.06. : 노후교통신호제어기 교체 대상지 선정
- 2025.07. ~ 2025.08. :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6개 구역), 하반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2개 구역)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26대 교체공사 - 노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15개소 교체공사 - 장기동 1773번지 일원 신호등 설치공사 및 사우동 보건소 삼거리 횡단보도 이설공사 - 교통신호등 운영 전문기관 위수탁 체결
2024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7개 구역), 하반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4개 구역) - 교통신호등 운영 전문기관 위수탁 체결
2025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7개 구역) - 교통신호등 운영 전문기관 위수탁 체결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23,498	1,553,296	-	170,202	
2024	1,643,500	1,498,622	-	144,878	
2025	1,671,404	419,704	-	1,251,7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8급 김수은	전화	2482
-----	-------	------------	-----	----------	----	------

#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노인보호구역
사업규모	신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3개소 및 실태조사 14개소		
사업목적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4 제1항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과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60,000	73,900	190,000	0	-116,100	-86,100	
국비		0				0	
도비	80,000	36,950	95,000	0	-58,050	-43,050	
시비	80,000	36,950	95,000	0	-58,050	-43,05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6,100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전환)	308-1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품셈) : 경정(1,800,000원*14개소)-기정(1,882,353원*17개소)	=	-6,800
	401-01 시설비	.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 노면표시 설치(품셈) : 경정(30,000원*923㎡)-기정(30,000원*500㎡) -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나라장터) : 경정(30,500,000원*0개소)-기정(30,500,000원*4개소)	=	12,700
			=	-122,000

## □ 예산요구 사유

- 신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노면도색 등) 설치를 통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및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 필요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 등) 신설으로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연 1회 실시 의무화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의 노인보호구역 예산 삭감에 따른 감액(190,000천원 → 73,900천원)
- 예산 삭감에 따른 실태조사 항목 및 개소수(17→14) 조정 및 신호과속단속카메라 설치계획 폐지
- 신규 지정 노인보호구역의 확대(0.54km → 0.8km)로 노면표시(미끄럼방지포장, 자착식표지 등) 물량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2025. 12. : 신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 착공 및 준공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착수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신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2025	- 신규 지정된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60,000	57,410	82,456	20,134	
2025	272,456	9,524	-	262,932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9급 전성환	전화	2871
-----	-------	------------	-----	----------	----	------

#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국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4대 교체 구입		
사업목적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편의 증진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제1항
	해당조례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52,736	208,000	196,000	0	12,000	55,264	
국비		98,000	98,000			98,000	
도비	55,200	0				-55,200	
시비	97,536	110,000	98,000		12,000	12,464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0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국비)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 경정(52,000,000원*4대)-기정(49,000,000원*4대)	= 12,000	

## □ 예산요구 사유

- 특별교통수단 4대(연식 2016년) 내용연수 초과 및 차량 노후(운행거리 300,000km 초과)로 교체

## □ 예산증감 사유

- '25년형 카니발 차량개조비용 상승으로 추가 예산 필요  
(국비 보조금 내시 산출기초 1대당 49,000천원이나, '25년형 차량 가격 1대당 52,000천원)
- 차량 노후화로 인해 잦은 고장으로 안전사고 위험 및 수리 비용 과다 발생에 따른 차량 교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반영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2025.4.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6. : 사업집행(차량구매-조달청)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 구입 (3대 교체)
2024	- 특별교통수단 차량 3대 구입 (3대 교체)
2025	- 특별교통수단 차량 4대 구입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6,767	136,576	-	191	
2024	152,736	152,734	-	2	
2025	196,000	-	-	196,0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물류정책팀장 박상우	담당자	행정6급 서호진	전화	2464
-----	-------	--------------	-----	----------	----	------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설치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전역
사업규모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시설물 설치(주정차 금지 표지판, 소화전 적색표시 등)		
사업목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질서 확립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無人)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887,704	1,125,404	1,125,404	0	237,700	
국비					0	
도비					0	
시비	887,704	1,125,404	1,125,404	0	237,7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0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설확충	201-02 공공운영비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 - 경정(HW·SW 유지관리 : 290,000,000원) - 기정(HW·SW 유지관리 : 320,000,000원)	-30,000	
	401-01 시설비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설치(나라장터) : - 경정(3,750,000원 * 8개소) - 기정 (3,750,000원 * 0개소)	= 30,000	

## □ 예산요구 사유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
  - 불법주정차 단속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 및 신속한 장애복구를 통한 교통질서 확립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설치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사용연수 초과 및 노후화로 교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
  - 유지관리 계약 후 집행 잔액을 활용하여 시스템 운영 효용성 증대(320,000천원 → 290,000천원)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설치
  - 노후화 및 고장이 잦은 단속CCTV 교체 필요(8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반영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2024.11. 반영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12.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유지관리 용역 착수 및 준공
  - 2025.06. ~ 12.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교체 설치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불법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 10개소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 : 17개소 - 불법주정차 방지 블라드 설치 : 308개 - 소화전 적색표시 플라스틱 커버 설치 : 150개소 - 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440개, 시선유도봉 설치 : 528개 - 소화전 적색 복선 노면표시 공사 : 900㎡
2024	- 소화전 적색표시 플라스틱 커버 설치 : 125개소 -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유지관리(연간단가) : 주정차 금지구역 352개소, 일방통행 33개소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설치 : 48개 설치, 노면표시 설치 : 2,288.4㎡ 설치
2025	- 불법주정차 단속 CCTV(고정형) : 5개소 - 소화전 적색표시 플라스틱 커버 설치 : 100개소 - 주정차금지구역 및 일방통행로 유지관리(연간단가) : 주정차 금지구역 374개소, 일방통행 33개소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표지판 및 노면표시 : 연간단가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114,928	2,047,767	-	67,161	
2024	887,704	877,372	-	10,332	
2025	1,125,404	387,116	-	738,288	4.23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9급 오은채	전화	5923
-----	-------	------------	-----	----------	----	------

#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관내 공영주차장
사업규모	공영주차장 61개소, 주차면 5,149면		
사업목적	공영주차장 지속 운영 및 관리,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b>제8조 ①</b>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b>제13조 ②</b>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519,830	4,825,821	3,515,821	1,060,000	250,000	1,305,99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519,830	4,825,821	3,515,821	1,060,000	250,000	1,305,991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b>합 계</b>			<b>250,000</b>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하성 공영주차장 정비 (품셈 및 조달청)	= 200,000	
		- 주차관제기기, 캐노피, CCTV 설치, 노면도색 등 시설물 정비	= 30,000	
		. 운양동 주차관제 장치 설치 (품셈 및 조달청)	= 20,000	
		- 주차관리 PC 1대, 차량번호인식기 2대	= 20,000	
		. 장기 노외 공영주차장 담벼락 설치 공사 (품셈 및 조달청)	= 20,000	
		- 경관 블록 및 관목식재 공사		

### □ 예산요구 사유

- 하성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를 통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장기 주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료로 전환하고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자 함
- 운양동 행복나눔 공영주차장의 장기 주차 차량 등의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이중주차로 인한 민원인 간 갈등 해소
- 장기 노외 공영주차장 주차시 매연 및 불빛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 해소

□ 예산증감 사유

- 하성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에 따른 증액
- 운양동 행복나눔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장치 설치에 따른 증액
- 장기 노외 공영주차장 담벼락 설치 공사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6. : 설계 용역 착수
  - 2025.07. : 설계 용역 준공  
공사 착공
  - 2025.08. : 공사 준공
  - 2025.09. : 김포 도시관리공사 위·수탁 계약 및 유료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기획재정부 및 농어촌공사 부지) / 공영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용품 구매 / 장기동 노외주차장 외 4개소 정비공사
2024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기획재정부 및 농어촌공사 부지) / 공영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용품 구매 / 북변 자주식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 사우자주식 공영주차장 구조 보완 공사
2025	사우자주식 공영주차장 관제기기 교체/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30,272	2,544,615	237,881	47,776	
2024	3,757,711	3,248,931	488,000	20,780	
2025	5,063,821	2,987,981	-	2,075,84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시설6급 박종국 시설8급 김인혁	전화	5941 2330
-----	-------	------------	-----	----------------------	----	--------------

#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도로 일원
사업규모	교통신호기 신규설치 12개소		
사업목적	교통신호기 신규설치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신호 운영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600,000	300,000	0	300,000	6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00,000	300,000		300,000	60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0	
교통신호등 설치사업	401-01 시설비	· 교통신호기 신규설치 공사 : (경정)50,000,000원*12개소-(기정)75,000,000원*4개소	= 300,000	

###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신호기 신규 설치 : 김포경찰서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른 교통신호기 8개소 추가 설치  
[대상지 : 구래초등학교 앞, 중봉1로 46, 북변삼거리, 걸포동 570-2, 마곡리 635-34, 감정중학교 앞, 마산동 673-1, 신곡리 1056]

### □ 예산증감 사유

- 김포경찰서 교통안전심의 결과에 따른 교통신호기 신규 설치장소 증가(4개소 → 12개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4. ~ 2025.07. : 도로점용(굴착)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도로관리심의 및 도로점용허가)
- 2025.07. ~ 2025.08. : 교통신호기 신규설치 대상지 12개소 설계
- 2025.08. ~ 2025.09. : 교통신호기 신규설치 대상지 12개소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300,000	-	-	300,00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9급 오은채	전화	5923
-----	-------	------------	-----	----------	----	------

#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5. 6.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및 주변 교통권역
사업규모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사업목적	법정계획인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8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① 시장이나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5년 단위의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0	400,000	0	0	400,000	4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0,000			400,000	400,000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0,000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	207-01 연구용역비	· 김포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용역(교통표준품셈)	= 400,000	

### □ 예산요구 사유

-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적 의무사항임
- 출·퇴근시간 심각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 위험 등 교통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하고,
-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등 대규모 개발계획 등 급변하는 우리시 교통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교통정책 방향 설정 및 교통업무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 □ 예산증감 사유

- 제4차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21~2025) 만료 및 제5차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2026~2030)의 수립시기 도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6. : 용역 발주
- 2025.08. : 계약 체결 및 용역 착수
- 2026.05. : 경기도 제출 및 심의
- 2026.06. : 확정 고시 및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7급 전보배	전화	2465
-----	-------	------------	-----	----------	----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

**대중교통과**





#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전환사업)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공영 및 민영 차고지
사업규모	운수업체 버스 차고지 11개소		
사업목적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개선을 통한 실질적 버스 서비스 개선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7. 운수종사자의 휴식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개선하는 경우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2,885	73,867	21,000	0	52,867	40,982	
국비		0				0	
도비	9,865	22,160	6,300		15,860	12,295	
시비	23,020	51,707	14,700		37,007	28,687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2,867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307-09 운수업체보조금	· 차고지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개선 경정 73,867,000원 (11개소) - 기정 21,000,000원 (2개소) =	52,867	

## □ 예산요구 사유

- 운수업체의 운수종사자 휴식을 위한 휴게시설 개선 수요 제출하여 '25년 경기도 내시 반영
- 운수종사자의 휴식 공간 확대 및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실질적 버스 서비스 개선

## □ 예산증감 사유

- '25년 경기도 확정내시 반영 (지원대상 11개소, 73,867천원)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08. : 버스 차고지 인프라 개선 사업 수요조사
- 2024. 10. : 도비 보조금 가내시 (2개소, 21,000천원)
- 2025. 01. :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11개소, 73,867천원)
- 2025. 04. ~ 11. : 시설개선 사업 추진 및 보조금 운수업체 지급
- 2025. 12. : 버스 차고지 시설개선 사업 정산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이젠/결포/구래/태리/북변 차고지 시설개선 : 휴게시설 정비 완료
2024	- 대포리/이젠/결포/구래 차고지 시설개선 : 휴게시설 정비 완료
2025	- 4 ~ 11월 중 사업 추진 예정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19,882	513,438	-	6,444	
2024	32,885	32,885	-	-	
2025	21,000	-	-	21,000	4.23.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타임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8급 고현아	전화	5917
-----	-------	-------------	-----	----------	----	------

# 도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공영버스 7개 노선		
사업목적	교통취약지역의 상시 대중교통 수단 확보를 위한 공영버스의 운영손실금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657,220	701,780	636,660	0	65,120	44,560	
국비		0				0	
도비	197,166	210,534	190,998		19,536	13,368	
시비	460,054	491,246	445,662		45,584	31,192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5,120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경정(701,780,000원) - 기정(636,660,000원)	= 65,120	

##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취약지역의 상시 대중교통 수단인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금 지급

##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에서 연간 운행손실금 확정에 따른 예산 증액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 사업 추진계획

###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 : 도비 보조금 가내시 시달
- 2025. 3. : 2024년 도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확정 및 확정내시 시달
- 2025. 4. ~ 9. : 마을버스 및 벽지·공영버스 운송원가 용역 추진
- 2025. 4. : 상반기 운행손실금 지급
- 2025. 12. : 하반기 운행손실금 지급
- 2026. 1.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공영버스 7대 운영손실금 지급(581,284천원)
2024	공영버스 7대 운영손실금 지급(657,220천원)
2025	공영버스 7대 운영손실금 상반기 가지급(350,890천원)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581,284	581,284	-	-	
2024	657,220	657,220	-	-	
2025	636,660	350,890	-	285,770	4.23.기준 집행현황

##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마을버스티eam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8급 도우리 행정8급 고현아	전화	2456 5917
-----	-------	-----------------------------	-----	----------------------	----	--------------

#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운송업체 3곳, 마을버스 운송업체 11곳		
사업목적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송기관의 환승할인금의 일부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법령 위임규정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2조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107,280	4,046,110	4,413,940	0	-367,830	-1,061,17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107,280	4,046,110	4,413,940		-367,830	-1,061,17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7,830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4,046,110,000원)-기정(4,413,940,000원)	= -367,830	

##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약자수도권통합요금제시행 공동합의문('07)에 따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내 전철·시내·마을 버스 간 환승할인으로 인한 운임손실 일부를 지원함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 예산 편성

##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총사업비 감액(240,000백만원→220,000백만원)으로 인하여 시군부담비 감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 : 도비 보조금 가내시 시달
- 2025. 1. : 확정내시 시달
- 2025. 3. : 수도권 환승할인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
- 2025. 3. ~ 12. : 월별 환승할인 산정 및 보조금 지급(도재배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도재배정) 시내버스 6,582,744,730원, 마을버스 626,173,150원 지원금 지급
2024	(도재배정) 시내버스 5,994,316,730원, 마을버스 472,005,070원 지원금 지급
2025	(도재배정) 시내버스 2,127,325,830원, 마을버스 38,271,640원 지원금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741,740	4,741,740	-	-	
2024	5,107,280	5,107,280	-	-	
2025	4,413,940	4,046,110	-	367,830	4.23.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마을버스티eam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8급 도우리 행정8급 고현아	전화	2456 5917
-----	-------	-----------------------------	-----	----------------------	----	--------------

# 벽지노선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벽지노선 3개(101,102,83)		
사업목적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0	769,427	768,383	0	769,427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769,427	768,383		769,427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44	
벽지노선 지원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769,427,000원)-기정(768,383,000원)	= 1,044	

## □ 예산요구 사유

-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벽지노선 운행손실을 지원하여 교통사각지대 해소

##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벽지노선 운행손실금 확정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0. : 도비 보조금 가내시 시달
- 2025. 1. : 확정내시 시달
- 2025. 4. ~ 9. : 마을버스 및 벽지·공영버스 운송원가 용역 추진
- 2025. 8. : 자치단체간부담금 납부
- 2025. 9. ~ 12. : 운행손실금 지급(도재배정)
- 2026. 1. :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도재배정) 990,133천원 운행손실금 지급
2024	(도재배정) 1,065,995천원 운행손실금 지급
2025	(도재배정) 312,521천원 운행손실금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93,133	693,133	-	-	
2024	745,995	745,995	-	-	
2025	768,383	-	-	768,383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도우리	전화	2456
-----	-------	------------	-----	----------	----	------

#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택시 632대		
사업목적	택시요금의 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4호 제9조(재정 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13,349	33,370	13,315	0	20,055	20,021	
국비		0				0	
도비	5,006	12,514	4,993		7,521	7,508	
시비	8,343	20,856	8,322		12,534	12,513	
기타		0				0	자부담 8,343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b>합 계</b>			<b>20,055</b>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 경정(5,500원*632대*12월*80%)-기정(2,200원*632대*12월*80%) =	20,055	

## □ 예산요구 사유

- 택시요금 카드 결제 시 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통신료를 지원하여 카드 결제 기피 현상 해소
- 운송사업자의 재정적 부담 해소 및 카드 이용 활성화

## □ 예산증감 사유

-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액 증가 (택시 1대당 월 1,760원 → 4,4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10.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5. 1. :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 2025. 1. ~ 2025. 12. : 사업집행 (분기별 집행)
- 2026. 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법인택시 143대 - 개인택시 486대	2,925,120원 9,972,160원	지원 지원
2024	- 법인택시 146대 - 개인택시 486대	3,065,920원 10,056,640원	지원 지원
2025	- 25. 4월말 집행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200	12,897	-	303	
2024	13,349	13,122	-	227	
2025	13,315	-	-	13,315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택시 632대			
사업목적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9조 제4호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재정 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택시요금 카드 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111,150	194,000	111,150	0	82,850	
국비		0			0	
도비	33,345	58,200	33,345		24,855	
시비	77,805	135,800	77,805		57,995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2,850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택시 결제 수수료 지원 : 경정(25,580원*632대*12월)-기정(14,656원*632대*12월)	82,850	

## □ 예산요구 사유

- 소액결제액의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으로 택시업계 재정부담 완화
- 택시 이용객의 편리한 결제 수단을 제공 및 택시 이용 활성화

## □ 예산증감 사유

-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액 상향 (10,000원 미만 수수료 지원 → 15,000원 미만 수수료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10.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5. 1. :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 2025. 1. ~ 2025. 12. : 사업집행 (분기별 집행)
- 2026. 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법인택시 143대 2,925,120원 지원 - 개인택시 486대 9,972,160원 지원
2024	- 법인택시 146대 3,065,920원 지원 - 개인택시 486대 10,056,640원 지원
2025	- 25. 4월말 집행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0,033	81,247	-	28,786	
2024	111,150	88,479	-	22,671	
2025	111,150	-	-	111,15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230명		
사업목적	김포시 관내 법인택시(3개사)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해당조례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의2
<p>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생략)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p> <p>제8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대상자는 일정 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li> <li>2. 교통사고자 및 유발자의 과실 비율이 과반 이상자</li> </ol>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282,000	303,600	276,000	0	27,600	21,600
국비		0				0
도비	197,400	212,520	193,200		19,320	15,120
시비	84,600	91,080	82,800		8,280	6,48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600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 경정(110,000원*230명*12월)-기정(100,000원*230명*12월)	= 27,600	

## □ 예산요구 사유

-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액 증가 (운수종사자 1인/월 10만원 → 11만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10. : 도비 보조금 가내시
  - 2025. 1. :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 2025. 1. ~ 2025. 12. : 사업집행
  - 2026. 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총 2,374명 지원 / 166,180,000원 (월7만원 지원)
2024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총 2,663명 지원 / 266,300,000원 (월10만원 지원)
2025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총 686명 지원 / 75,460,000원 (월11만원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7,240	166,180	-	11,060	
2024	282,000	266,300	-	15,700	
2025	276,000	75,460	-	200,540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1개 협의회 운영 (위촉 위원 10명)		
사업목적	택시 부족지역의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총량 자율조정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적근거	법령 규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제9조 3. -바.
		<p>제9조(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의 산정 등) ① 시·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하 "사업구역"이라 한다)별로 택시의 적정 공급 규모(이하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이라 한다)를 산정하여야 한다.</p> <p>3. 바. 택시 부족지역의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총량 자율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사업구역의 택시대당인구수가 전체 사업구역의 평균값(312명/대)보다 높은 경우 해당 지역적 특수성 반영 필요에 따라 가목 산정공식에 따라 산정한 총량의 10% 범위에서 총량을 조정할 수 있음</li> <li>○ 택시총량 자율조정 협의회 구성은 사업구역내 노조·사업자 대표,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8~12인으로 구성하되 특정대표에게 치중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li> <li>○ 사업구역 관할 지자체장은 자율조정이 필요한 사유와 근거를 협의회 구성원에게 설명하고, 협의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2/3이상 동의하는 경우 총량을 조정할 수 있음</li> </ul>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0	1,000	0	0	1,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			1,00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	
택시 총량 산정 및 택시 공급 계획 수립 용역비	201-01 사무관리비	·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 운영 : 100,000원*10명*1회	= 1,000	

## □ 예산요구 사유

- 택시 부족지역의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해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 구성·협약하여 기본 총량 산정 결과의 10% 범위내 택시총량 조정 가능

□ 예산증감 사유

- 총량제 지침에 따른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 위원 참석 수당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8. : 제5차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 착수
- 2025. 2. : 국토교통부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시달
- 2025. 3. : 제5차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 준공 및 용역결과 검증요청 (김포시 → 국토부)
- 2025. 4. :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 구성
- 2025. 5. ~ 6. : 택시총량 자율조정협의회 개최 및 제5차 경기도 택시총량 심의 · 고시
- 2025. 7. : 택시 증차 계획 수립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제4차 택시총량 시행 (증차 : 개인택시 4대)
2024	- 제4차 택시총량 시행 (증차 : 법인택시 3대)
2025	- 제5차 택시총량산정 연구 용역 준공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2,000	13,860	5,940	2,200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노후택시 80대		
사업목적	낡은 택시의 대차 비용을 지원하여 택시 사업자의 재정부담 완화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5호
	제7조(재정 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제4호의2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5.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8조 제15호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로부터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회계자료 등)를 제출받아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1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26,000	80,000	0	0	54,000	
국비		0			0	
도비	13,000	24,000			11,000	
시비	13,000	56,000			43,00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0,000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 1,000,000원*80대	= 80,000	

##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택시의 대차비용을 일부 지원하여 경영 악화가 가중되고 있는 택시사업자의 재정부담완화
-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도모 등

**□ 예산증감 사유**

○ 관내 노후택시 80대 대폐차 지원으로 남은 택시 교체사업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도비 보조사업 수요조사
- 2025. 3. :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2025. 10. : 사업신청 공고
- 2025. 11. : 보조사업 신청
- 2025. 12. : 보조사업 심사 및 지원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 노후택시 교체 26대 지원 (법인택시 18대 / 개인택시 8대)
2025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26,000	26,000	-	-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박유선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

**건설도로과**





# 도로교통량 조사

사업기간	2025. 9.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주요도로
사업규모	김포시 고촌읍 신곡사거리 외 37개소		
사업목적	김포시 주요도로의 교통량 관측 조사 및 분석을 통한 도로의 계획, 건설,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102조
	법령 위임규정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 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22,000	22,000	0	0	22,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000	22,000			22,000	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도로교통량 조사	401-01 시설비	. 영상측정장비 설치운영(38개소) . 교통량 모니터링 . 기타장비(저장장치)	= 3,900 = 18,000 = 100	

## □ 예산요구 사유

- 국토교통부 예규 「도로교통량 조사지침」에 의거 도로를 주행하는 각종 통행 차량의 통과 대수를 종류별 방향별 시간별 등에 대하여 계수적으로 관측하여 조사결과를 도로의 계획, 건설 및 관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실시계획 수립 및 교통량조사 용역 체결
- 2025. 10. : 교통량조사 실시
- 2025. 12. :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신곡사거리 외 37개소 교통량 조사 실시
2024	신곡사거리 외 37개소 교통량 조사 실시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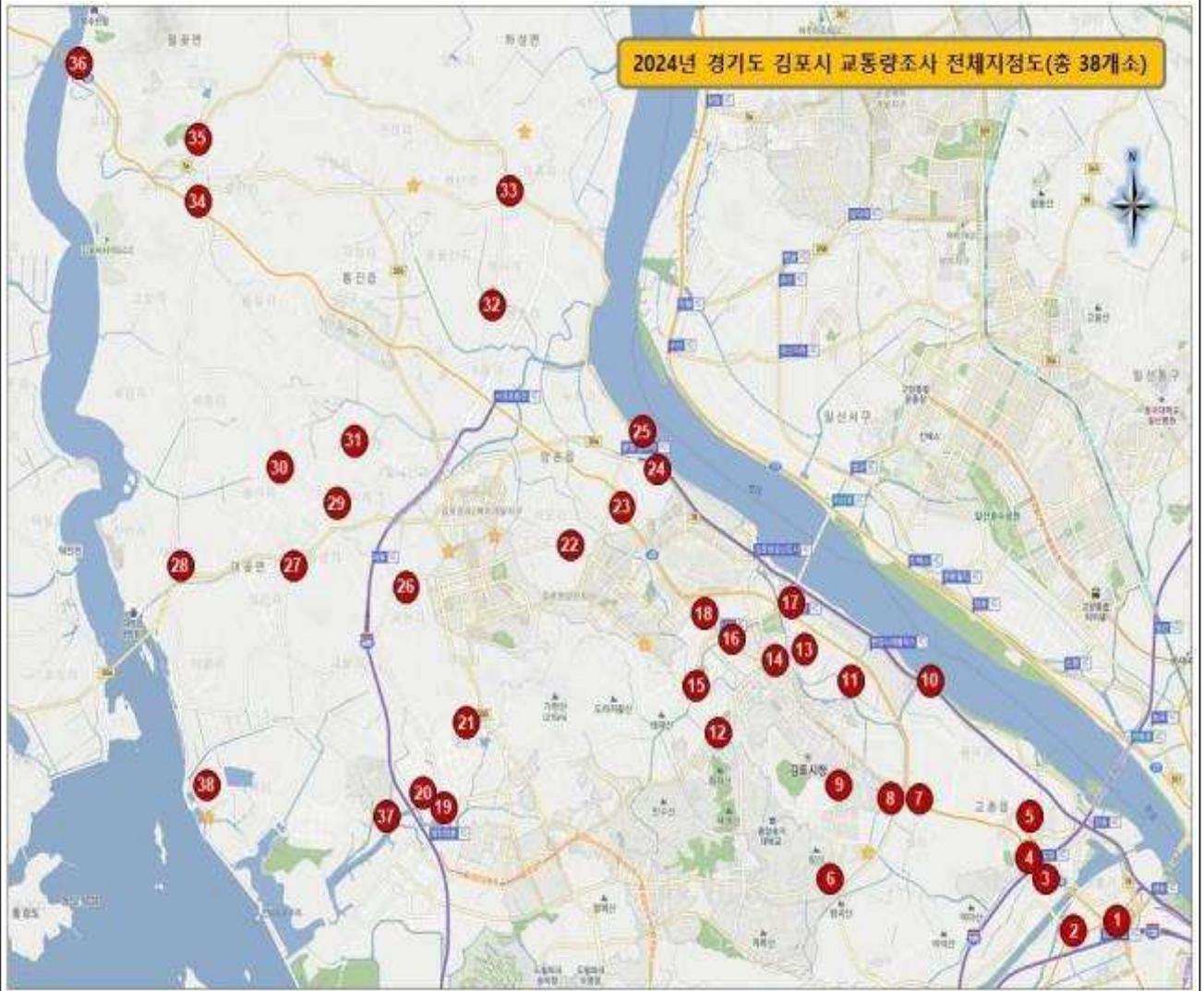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2,000	18,789	-	3,211	
2024	22,000	17,988	-	4,012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고촌읍 신곡사거리 외 37개소	2회추경 요구액 (천원)	22,000
부기명 (세부사업)	도로교통량 조사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주요도로		

위치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9급 임현호	전화	2438
-----	-------	-------------	-----	----------	----	------

#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사업기간	2025. 9.~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농어촌도로
사업규모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1식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식		
사업목적	농어촌도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농촌지역의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
	제6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시도[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도(市道), 특별자치시의 시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도를 말한다·군도 이상의 도로를 중심으로 관할 구역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 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인접 군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0	200,000	0	0	2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0			200,00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401-01 시설비	·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수립용역 1식 ·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및 기후변화 영향평가 1식 ·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변경)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1식	= 80,000 = 60,000 = 60,000	

## □ 예산요구 사유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라 5개년마다 수립·변경 필요('21.6.28.)
- 상위 도로와의 연결 및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

## □ 예산증감 사유

- 5개년마다 수립·변경함에 따라 5년 주기로 계획수립 용역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기본 및 정비계획 용역 착수
- 2026.12. :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도유진	전화	2437
-----	-------	-------------	-----	----------	----	------

# 김포 도시계획도로(한강소로1-260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21. 1. ~ 2026. 3.	사업위치	김포시 운양로 136 일원
사업규모	L=0.4km, B=10m		
사업목적	인구 및 차량증가, 모담초등학교 신설에 따라 좁은 마을안길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연)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6조
	제88조 제1항(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6조 제1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1,504,855	200,000	0	0	-1,304,85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504,855	200,000			-1,304,855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김포 도시계획도로 (한강소로-260호선)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보상비 : L=0.4km, B=10m(2차로) - 보상필지 수 : 3필지	= 200,000	

## □ 예산요구 사유

- 모담초·중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및 차량 교행 불가 민원 해소를 위해 기존 관습로 확장공사(1차로→2차로) 추진

## □ 예산증감 사유

- 기존 관습로의 신속한 확장공사가 필요함으로 2025년 하반기 보상 등 사전 절차 추진을 위한 부족 사업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2020.10.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0. 6. : 도로건설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0. 10. :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
- 2025. 3. : 손실보상계획공고
- 2025. 5. : 실시계획(변경)인가 승인
- 2025. 12. : 공사 착공(관습로 확장)
- 2026. 3. : 공사 준공(관습로 확장)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A+B+E)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F)	비고
			계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계	2,590,000	2,390,000	0	0	0	200,000	0	
공 정 별	설계비	110,000	110,000	0				
	보상비	1,200,000	1,000,000	200,000		200,000		
	공사비	1,280,000	1,280,000	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실시계획인가 완료, 보상착수 및 공사착공
2024	- 공사준공
2025	-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46,349	107,253	2,239,096	-	
2024	2,239,096	734,241	1,504,855	-	
2025	1,504,855	654,823	-	850,032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0.4km, B=10m	2회추경 요구액 (천원)	200,000
부기명 (세부사업)	김포 도시계획도로 (한강소로1-260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운양로 136 일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8급 이유나	전화	2458
-----	-------	-------------	-----	----------	----	------

# 마을회관 관리

사업기간	2025. 5. 1. ~ 2025. 12. 31.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마근포리 외 2개소	대표자	각 마을회 대표(이장)
사업목적	마을회관 환경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 및 주민숙원 해소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템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 ■해당없음(수령자지급형)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6조(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을 편성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지원대상)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동·리(이하 "통·리"이라 한다) 단위로 형성된 지역의 마을회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105,000	153,341	116,875	0	48,341	
시비	105,000	153,341	116,875		48,341	
자부담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36,466	36,466	0	
마을회관 관리	402-01 민간자본보조	· 경정(153,341천원)-기정(116,875천원) - 마근포리 마을회관(지붕방수) : 18,480천원*1식 = - 유현2리 마을회관(도배·장판 교체) : 3,707천원*1식 = - 대명2리 마을회관(샷시·마루 교체) : 14,279천원*1식 =	36,466	36,466		

## □ 예산요구 사유

-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복지 및 정주의식을 증진시키고자 함

## □ 예산증감 사유

- 관내 마을회관 185개소 중 129(70%)개가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시설로 매년 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마을회관(7개소) 외에 노후화가 심각한 마을회관의 보수를 위해 사업대상지 추가(3개소)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4.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증축공사 : 대벽1리 마을회관 ○ 보수공사 : 동을산1리 마을회관 외 3개소
2024	○ 보수공사 : 도사2리 마을회관 외 7개소
2025	○ 보수공사 - 가현5리 외 1개소 준공 - 풍곡2리 외 4개소 공사 진행중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314,590	314,590		314,480	314,480		110	110		
2024	105,000	105,000		96,214	96,214		8,786	8,786		
2025	116,875	116,875		28,265	28,265		88,610	88,610		4.23. 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마을회관 보수	2회추경 요구액 (천원)	36,466
부기명 (세부사업)	마을회관 관리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위치도					
	현장사진				
		<p>마근포리 [지붕방수]</p>		<p>유현2리 [도배·장판교체]</p>	
	<p>대명2리 [샷시마루교체]</p>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행정9급 김지민	전화	2454
-----	-------	------------	-----	----------	----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

**도로관리과**





#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 보수공사

사업기간	2025. 8.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김포대로 1433 일원
사업규모	방음 패널 보강재 1598ea, 방수테이프1,925㎡, 홈통 추가 설치 등		
사업목적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누수로 인한 보수공사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0	983,000	0	0	983,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983,000			983,00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83,000	
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 보수공사	401-01 시설비	·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하자 보수공사 및 부대공사	= 983,000	

## □ 예산요구 사유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하여 2019년 준공된 장기지하차도 방음터널 관련하여 상부 방음패널의 누수율이 높아 시에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며,
- 지속적인 협의 끝에 공사비983,000천원 중 LH의 분담금(860,000천원)이 확정되어 관련 예산을 요청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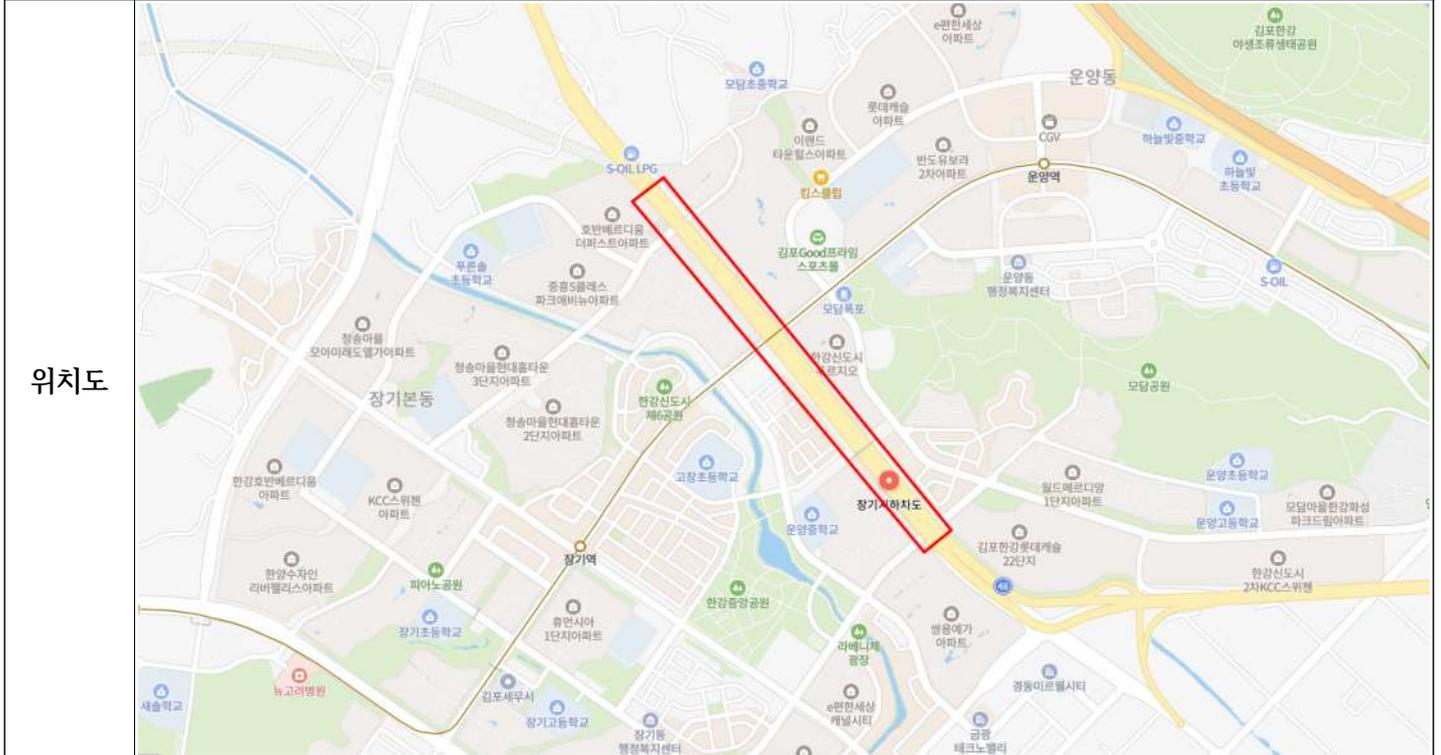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4. : LH분담금 납부(860,000천원)
- 2025.07. :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5.12. : 공사준공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규모	방음 패널 보강재 1,598ea, 방수테이프1,925m <sup>2</sup> , 홈통 추가 설치 등	2회추경 요구액 (천원)	983,000
부기명 (세부사업)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위치	장기동 1929-8 일원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9급 김재현	전화	4585
-----	-------	------------	-----	----------	----	------

# 지하차도 안전관리용 차량 구매

사업기간	2025. 4.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지하차도
사업규모	관내 지하차도 9개소 유지·관리(6,797m)		
사업목적	지하차도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56,000	160,330	100,000	0	60,330	104,33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6,000	160,330	100,000		60,330	104,33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330	
지하차도 안전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지하차도 안전관리용 차량 구매	= 60,330	

## □ 예산요구 사유

- 지하차도 순찰 및 시설물 보수 시, 지하차도 안전관리용 방호 차량(대형 화물트럭) 부재로 안전 사고가 우려되어 기 정수유지된 차량 구입비 편성(기존차량 '24. 1. 폐차 처리)

## □ 예산증감 사유

- 김포도시관리공사 지하차도 순찰 시 지하차도 안전관리용 방호 차량 부재로 잇따른 안전사고 발생
- 지하차도 긴급 상황 시 안전한 대처를 위해 3.5톤 방호 화물차량을 구매하고자 함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일자	2024.11 반영					2009년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6. : 지하차도 순찰용 차량 구매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운양지하차도 제트팬 점검용역 - 장기지하차도 내 점검용 안전난간 설치
2024	- 장기지하차도 제트팬 점검용역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9,076	119,075		1	
2024	56,000	49,437		6,563	
2025	100,000	-	-	100,000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규모	관내 지하차도 9개소 유지·관리(6,797m)	2회추경 요구액 (천원)	60,330
부기명 (세부사업)	지하차도 안전관리용 차량 구매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지하차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7급 김승환	전화	4587
-----	-------	------------	-----	----------	----	------

# 지방도 제설제 지원

사업기간	2025. 07. ~ 10.	사업위치	관내 지방도
사업규모	친환경 제설제 81톤 구입		
사업목적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적기에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31조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36,800	36,800	0	0	36,800	0	
국비		0				0	
도비	36,800	36,800			36,800	0	
시비		0				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6,800	
지방도 제설제 지원	206-01 재료비	· 친환경 고상 제설제 : 450,000원*81.7톤	≒ 36,800	

## □ 예산요구 사유

○ 경기도 도로안전과-2346(2025.02.07.)호 「2025년 지방도 제설제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알림」 관련하여 지방도 제설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9. : 친환경 제설제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친환경 제설제 톤백 83포 구매
2024	- 친환경 제설제 톤백 85포 구매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6,800	36,717	-	83	
2024	36,800	36,568	-	232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4
-----	-------	------------	-----	----------	----	------

# 설해 대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사업기간	2025. 07. ~ 10.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친환경 제설제 420톤 구입		
사업목적	겨울철 강설 피해에 대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gt;(연례)반복 &lt;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31조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67,000	189,000	0	0	189,000	122,000	
국비		0				0	
도비	33,500	94,500			94,500	61,000	
시비	33,500	94,500			94,500	61,000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9,000	
설해대비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사업	206-01 재료비	· 친환경 제설제 : 450,000원*420톤	= 189,000	

## □ 예산요구 사유

- 안전기획관-2960(2025.02.13.)호 「2025년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에 따른 법정도로 제설을 위한 도비 지원 사업

##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따른 도비 내시액 증가

##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 : 친환경 제설제 구입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친환경 고상 제설제 154톤 구매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67,000	66,524	-	476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4
-----	-------	------------	-----	----------	----	------

#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김포본동 도로재포장)

사업기간	2025. 05. ~ 2025. 08.	사업위치	감정동 688번지, 북변동 408-4번지
사업규모	도로 절삭 후 재포장 204a		
사업목적	노면상태가 불량한 관내 법정도로 구간에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항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시행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계	0	408,308	0	0	408,30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408,308	0	0	408,308	
기타		0			0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1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08,308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지원사업 (김포본동 도로재포장)	401-01 시설비	· 법정도로 재포장공사 : 2,000,000원 * 204a	408,308	

## □ 예산요구 사유

- 노면상태가 불량한 관내 법정도로 구간에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 재포장 공사 지연 시 차량 파손(영조물 배상 등) 및 안전사고 위험 민원 급증 예상

## □ 예산증감 사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2025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 예산지원을 통한 김포본동 노후도로 재포장[매칭사업(6.5:3.5)]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5.~2025.07. :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 2025.07. : 계약체결 및 공사착공
- 2025.08. : 공사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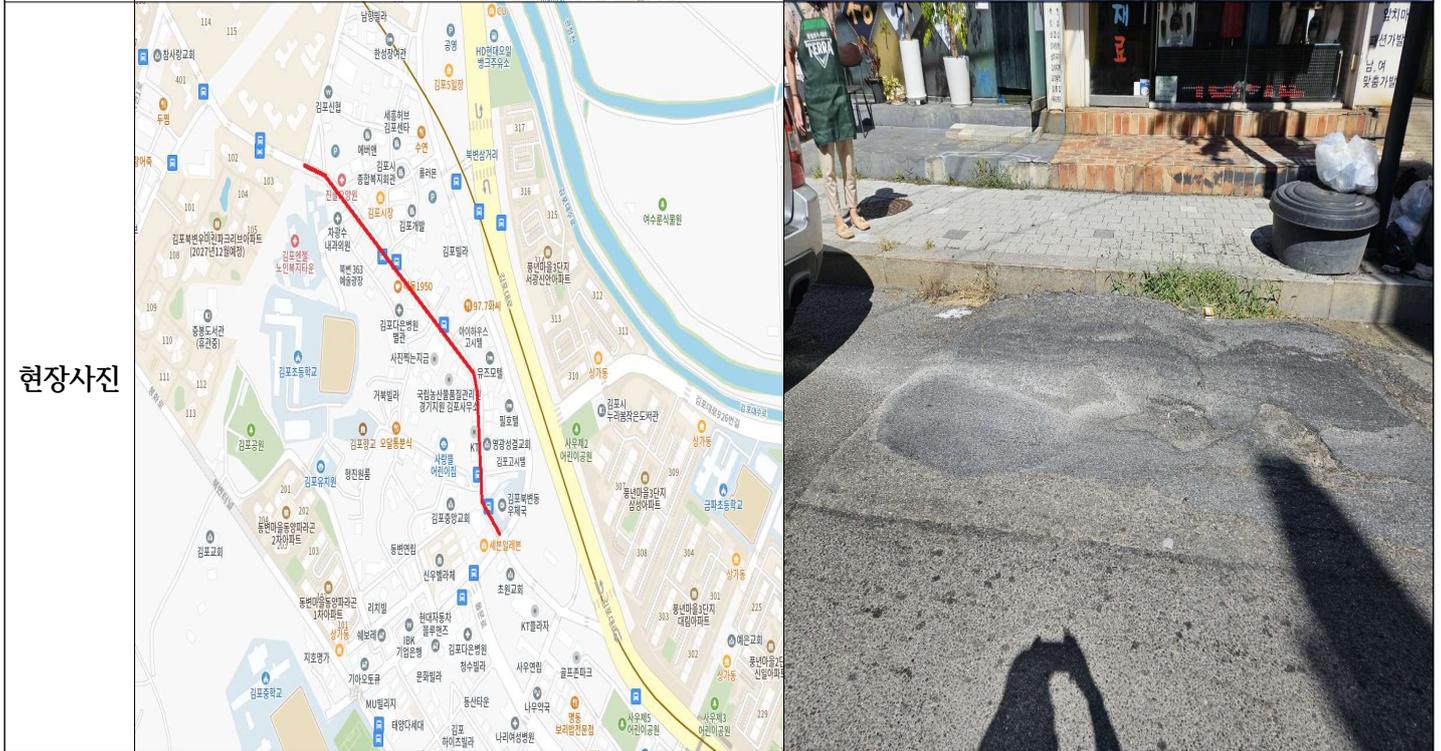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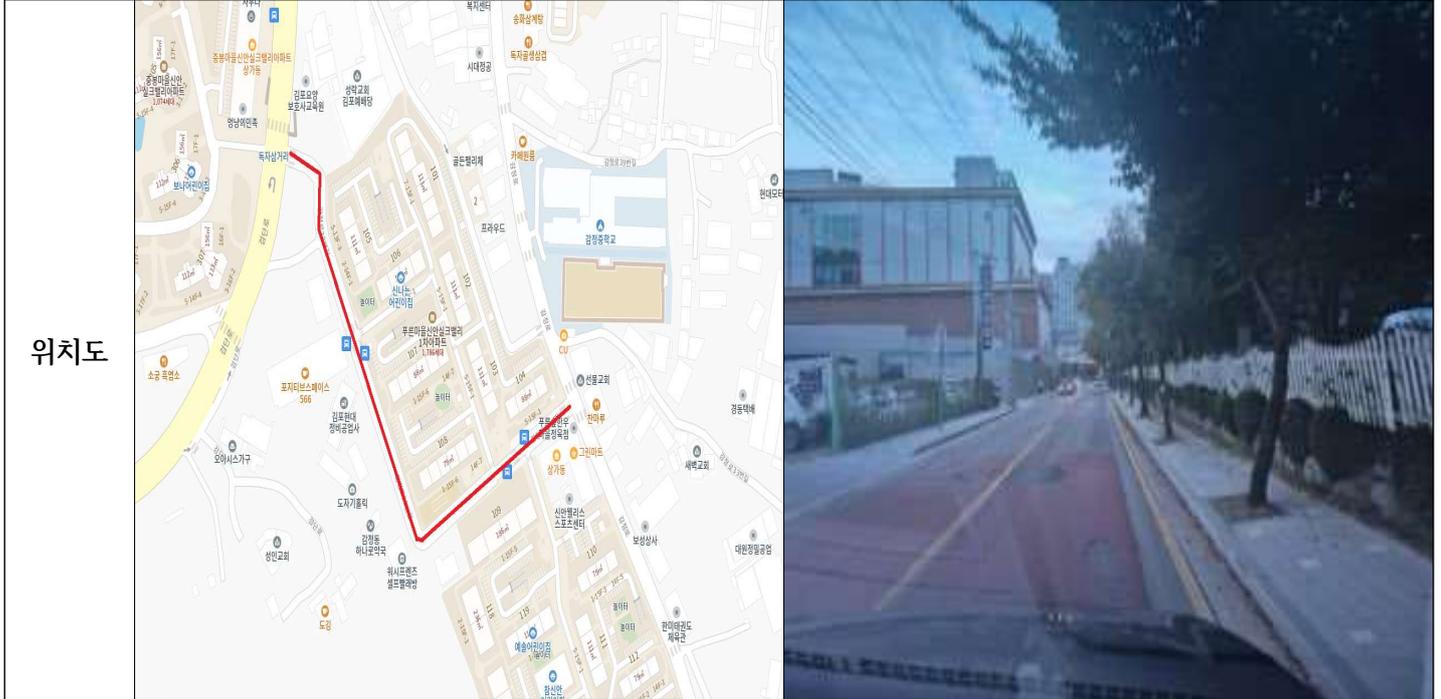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규모	A=204a	1회추경 요구액 (천원)	408,308
부기명 (세부사업)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사업 (김포본동 도로재포장)	사업위치	감정동 688, 북변동 408-4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7급 하만수	전화	4574
-----	-------	------------	-----	----------	----	------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

**차량등록과**





#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
사업규모	차량등록과 청사 내		
사업목적	주기적인 청사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제1항
	위임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제1항
	김포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편성액 (D)	2회추경 요구액 (E)		
계	95,096	98,132	92,062	0	6,070	3,03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5,096	98,132	92,062		6,070	3,036	
기타		0				0	자부담

##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70	
청사관리	401-01 시설비	· 승강기 보수 공사 : 6,070,000원	= 6,070	

## □ 예산요구 사유

- 청사 승강기 부품 노후화로 인한 부품 교체 등의 보수 공사를 통해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방지

## □ 예산증감 사유

- 청사 승강기 부품(로프, 시브 등) 노후화에 따른 고장으로 보수 비용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3. : 청사 승강기 로프 및 시브(도르래) 노후화로 인한 고장, 임시 조치
- 2025.06.~2025.07. : 청사 승강기 보수공사 계약 진행 및 공사 착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4. 23.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무인경비/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및 시설관리 -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매 - 청사 제초작업 실시(3회) 및 청사청소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 청사 외벽 방수공사 완료
2024	- 무인경비/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및 시설관리 - 청사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매 - 청사 제초작업 실시(3회) 및 청사청소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 청사 승강기 CCTV 공사 - LED 옥외간판 교체 설치
2025	- 무인경비/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및 시설관리 - 청사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매 - 청사청소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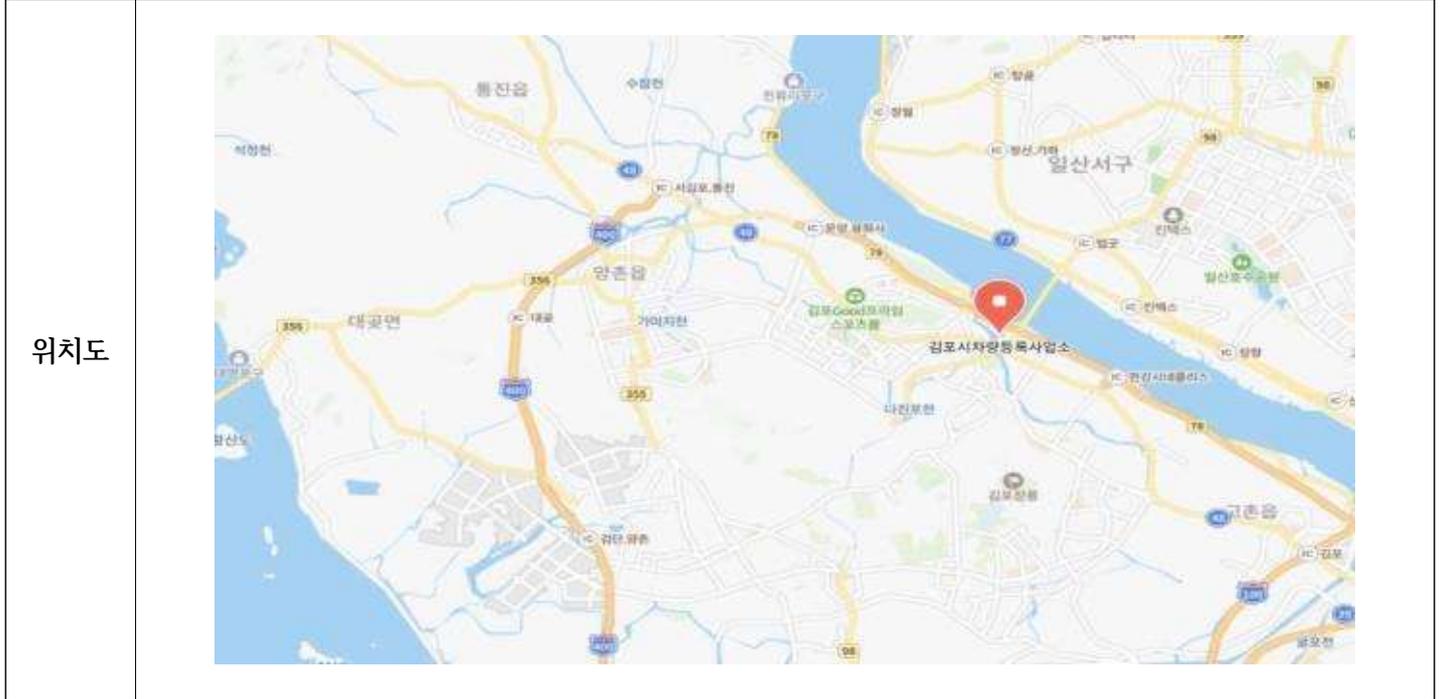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6,155	123,220	-	2,935	
2024	95,096	93,082	-	2,014	
2025	92,062	42,518	-	49,544	4.23.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차량등록과	사업규모	차량등록과 청사	2회추경 요구액 (천원)	6,070
부기명 (세부사업)	청사관리	사업위치	감암로 125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담당자	행정8급 김민경	전화	4902
-----	-------	------------	-----	----------	----	------